
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24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4.

발 의 자 : 김병기 · 문금주 · 박용갑
이훈기 · 백승아 · 김현정
전진숙 · 안태준 · 허영
김준혁 · 김동아 · 강선우
김승원 · 최혁진 · 신영대
김문수 · 박민규 · 민형배
전용기 · 박홍배 · 송재봉
이상식 · 이주희 의원
(2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「검사징계법」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.

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.

이에 징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, 「검사징계법」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징계·직위해제·직권 면직에 대하여 「국가공무원법」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

제28조의3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병기위원이 대표발의한 「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24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3제1항제1호 중 “「검사징계법」 제2조”를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3호 중 “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”을 “파면된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그에 준하는 직위(이하 이 조에서 “검사장급 직위”라 한다)의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검사장급 직위에 보직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장급 직위 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.

제36조의 제목 “(정원·보수 및 징계)”를 “(정원 및 보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정원, 보수 및 징계에”를 “정원 및 보수에”로 한다.

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2(징계) ① 검사의 징계(징계부가금의 부과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을 준용한다. 다만, 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하며, 「국가공무원법」에

다른 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검사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.

1. 파면

2. 해임

3. 면직: 검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외에 「공무원연금법」에 따른 연금의 박탈·감액 등 다른 신분상·재산상의 불이익을 가하지 아니하는 징계

4. 정직: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징계

5. 감봉: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징계

6. 견책: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징계

② 검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청구한다. 다만,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한다.

1. 법무부장관

2. 검찰총장

제36조의3(직위해제 및 직권 면직) 검사의 직위해제 및 직권 면직에 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을 준용한다. 다만, 직권 면직의 사유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한한다.

제37조 중 “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

파면되지 아니하며, 징계처분이나”를 “징계처분이나”로, “해임”을 “파면·해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2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36조, 제36조의2, 제36조의3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를 청구하거나 직위해제·직권 면직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8조의3(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)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. 1. 「 <u>검사징계법</u> 」 제2조 각 호의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. (생략) ② (생략)	제28조의3(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「 <u>국가공무원법</u> 」 제78조제1항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. 1. 2. (생략) 3. <u>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</u>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. (생략)	제33조(결격사유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파면된</u> 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
제34조(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4조(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의 경우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그에 준하는 직위(이하 이 조에서 “검사장급</u>

② (생략)

제36조(정원·보수 및 징계) ①
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
그 정원, 보수 및 징계에 관하
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
정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<신설>

직위”라 한다)의 검사가 직무
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
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
여 검사장급 직위에 보직하기
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
는 검사장급 직위 외의 직위에
보직할 수 있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36조(정원 및 보수) ① -----

---정원 및 보수에-----

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36조의2(징계) ① 검사의 징계
(징계부가금의 부과를 포함하
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관
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을 준
용한다. 다만, 검사에 대한 징
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하
며,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른
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검사는
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준
하는 것으로 본다.

1. 파면

2. 해임

<신 설>

3. 면직: 검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외에 「공무원연금법」에 따른 연금의 박탈·감액 등 다른 신분상·재산상의 불이익을 가하지 아니하는 징계

4. 정직: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징계

5. 감봉: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징계

6. 견책: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징계

② 검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청구한다. 다만,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한다.

1. 법무부장관

2. 검찰총장

제36조의3(직위해제 및 직권 면직) 검사의 직위해제 및 직권 면직에 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을 준용한다. 다만, 직권 면직의 사유는 「국가공무원

제37조(신분보장) 검사는 <u>탄핵</u>이 <u>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</u> <u>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</u> <u>아니하며, 징계처분이나</u> 적격심 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<u>해임</u> · 면직 · 정직 · 감봉 ·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.	<u>법」 제70조제1항제4호 또는</u> <u>제5호에 한한다.</u> 제37조(신분보장) -----<u>징계처</u> <u>분이나</u>----- ----- ----- -----<u>파면</u> <u>· 해임</u>----- ----- --.
---	---